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
----------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12조)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안 제10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6. 7. 9.(목) ~ 2026. 7. 29.(수) (20일간),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을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정”을 각각 “통합 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회계·기금”을 “회계 또는 기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각각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합기금”을 “구청장은 통합기금”으로, “금고”를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통합계정”을 “통합 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행정국장, 밝은미래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을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요구”를 “요구가 있을 때”로,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 담당 과장”으로, “활동내역”을 “활동 내역”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 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 ----- ----- ----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3. (생략)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 -----. 1. ~ 3. (현행과 같음) ② 통합 계정----- -----. 1. --- 회계 또는 기금----- 2. 3.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재정안정화 계정-----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 계정-----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

청장은 통합기금-----

----- 금고(「지방회계

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

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 밝은미래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통합 계정-----

5. 재정안정화 계정 -----
--

6. (현행과 같음)

③ -----

-----.

----- 한다.

④ -----

-----.

1. -----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소장-----

으로 한다.

2.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담당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인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

제9조(위원의 임기) <삭 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⑤ (생략)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요구가 있을 때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관계 전문가 -----

-----.

<삭 제>

⑧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u>활동 내역</u>을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⑨ (생략) 제11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u>대하여</u>는 서초구 지출원을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u>경과한</u>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통합기금 담당 과장----- ----- <u>활동 내역</u>-----. 1. ~ 3.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공무원) ----- ----- ----- -----. ----- --- <u>대해서</u>----- -----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존속기한) ----- ----- <u>2031년 12월 31일</u>----- -----. ----- <u>지난</u>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김명은 (02-2155-6387)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2) 2155-6387